

전주온빛초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15. 04. 08. 제2015-1호
개정 2020. 02. 12. 제2019-1호
개정 2021. 02. 17. 제2020-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온빛초등학교 학교규칙」 제36조에 따라 전주온빛초등학교 학생의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전주온빛초등학교의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전주온빛초등학교의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등을 말한다.

제3조(인권 보장)

- ① 전주온빛초등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인권은 「헌법」,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등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③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 ④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⑤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나 절차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인권 교육)

- ① 전주온빛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30조·제31조에 따른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 ④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해야 한다.
- ⑤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해야 하며, 보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⑥ 보호자는 전주온빛초등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구성원의 책무)

- ①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자신의 인권을 학습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관련 법령과 전주온빛초등학교 규칙에 따른 책임

을 진다.

- ④ 교직원과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 인권을 학습하고 보호하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습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 생활

제1절 학교 안의 생활

제6조(기본 태도)

- ① 학생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 ③ 학생은 따돌림, 폭력 등 전주온빛초등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교직원의 정당한 권한에 따른 교육적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다만, 교직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 ⑤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⑥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 ⑦ 학생은 다른 학생과 교제 시 그 학생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⑨ 학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⑩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장난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⑪ 학생은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 ⑫ 학생은 교직원의 허락 없이 일과 중에 전주온빛초등학교 교문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제7조(용모)

- ① 학생은 머리모양과 옷차림을 자유롭게 한다.
- ② 학생은 청결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이나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8조(수업 태도 등)

- ① 학생은 수업 시간(시작과 끝)을 지킨다.
- ② 학생은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담임교사(임시 담임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교사”라 한다)의 수업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④ 학생은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이행한다.
- ⑤ 학생은 수업시간에 출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수면이나 휴식이 필요한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 ⑥ 학생은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교실을 청결하게 하고, 정리정돈을 한다.
- ⑧ 학생은 학급의 시설, 물품, 기자재 등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9조(시설 이용 등)

- ①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의 시설물, 물품, 교구 등을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하며, 사용한 후에는 정리정돈을 한다.
- ②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안의 시설물에 낙서를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을 사용하려면 교사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시설사용 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방과 후나 휴일 등에 전주온빛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면 교사 등의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의 급식실, 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질서를 잘 지키고, 위생과 청결에 유의한다.
- ⑥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의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⑦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시설물 등의 이용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 곧바로 교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제10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전주온빛초등학교 규칙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 ② 학교장은 전주온빛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전주온빛초등학교 안팎의 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정규교과 외의 활동)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외의 교육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장은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과 외의 교육 활동(방과후학교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정규교과 외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규교과 외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제12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정규교과 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휴식을 취할 권리 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장은 여학생이 생리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소유물 존중)

- ① 학생은 교직원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 물품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 ③ 학생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절 도행위 포함)한 경우 해당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사생활의 자유)

- 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
- ② 제1항에 관계없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강제로 빼앗을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학생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여학생에 대해서는 여교사 2명 이상, 남학생에 대해서는 남교사 2명 이상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 ④ 학생 소지품 검사는 비공개로 하며, 여러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주기적으로 하지 않는다.
- ⑤ 학생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며, 되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 ⑥ 학교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표시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⑦ 교직원이나 학생은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기록물(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을 봐서는 안 된다. 다만, 개인적인 기록물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나 글쓰기 교육 등의 목적으로 교사 등과 대화글 쓰기, 독감상문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생활의 비밀 보호)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전주온빛초등학교 안팎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장은 교육비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언제든지 학생 본인에 관한 전주온빛초등학교 기록을 볼 수 있다.
- ②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에 대하여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전주온빛초등학교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이것을 정정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대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주온빛초등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장은 전주온빛초등학교 안의 집회에 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안팎의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장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언론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⑥ 학생은 지정된 공간을 활용하여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다.

제20조(허락 사항)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하는 경우
2. 전주온빛초등학교 안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는 경우
3.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여가 활동)

- ① 학생은 여가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은 여가시간에 전주온빛초등학교의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지킨다.
- ③ 학생은 여가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교사의 허락 없이 휴식시간에 전주온빛초등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일과 종의 휴식시간에는 전주온빛초등학교 운동장 등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스케이트, 보드 등을 타지 않는다.

제22조(자치활동)

-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의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④ 학생자치기구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된다.

제23조(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전주온빛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④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⑥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전주온빛초등학교 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⑦ 학교장은 「전주온빛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전주온빛초등학교 생활규정」의 제정·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해야 하며,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2절 학교 밖의 생활

제24조(학교 밖의 생활)

- ①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 밖에서 긍지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 ② 학생은 교통규칙을 잘 지키며,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③ 학생은 외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대회에 전주온빛초등학교의 이름을 걸고 참가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받는다.

- ④ 전주온빛초등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교사 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⑤ 학생은 술, 담배 등 유행성 약물(본드, 가스)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는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

- ①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학생)가 자율적이고 올바른 전주온빛초등학교 밖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 1. 자녀(학생)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2. 자녀(학생)의 전주온빛초등학교 밖의 생활 중 친구 관계
 - 3. 자녀(학생)의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
 - 4. 자녀(학생)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 ② 보호자는 자녀(학생)에게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곧바로 전주온빛초등학교에 알리고 교사 등과 상담해야 한다.

제3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만든다.
-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하여 폭력행위,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학생은 음란, 폭력 등의 유해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으며, 유해 매체물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7조(전자기기 관리)

- ① 학생은 전주온빛초등학교에 오면 전자기기(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PDA) 등)의 전원을 꺼서 자신의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학생이 전주온빛초등학교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학생은 교사의 허락을 받아 전주온빛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④ 학생이 시험시간 중에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학생 교육

제1절 생활교육위원회

제28조(생활교육위원회 설치)

- ① 학교장은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온빛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생활 교육

제29조(체벌 금지) 전주온빛초등학교 구성원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체벌을 비롯하여 어떠한 유형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폭력

제30조(교사의 권한)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하여 교사 등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 환경 조성
3. 부당행위에 관한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6. 생활교육위원회에 의견 제출
7.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전주온빛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 신청

제31조(교육적 조치)

- ① 교사 등은 학생 상담을 통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 등은 학생의 문제행동(학교폭력 사건은 제외)에 대하여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안의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후 교육
 5. 전주온빛초등학교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경우 원상복구 또는 청소 명령
- ③ 학교장은 교사 등이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반복해도 해당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전주온빛초등학교 안팎의 생활에서 전주온빛초등학교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4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포상

제33조(표창)

- ① 학교장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표창(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표창(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징계

제34조(징계의 원칙) 학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징계 대상 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권 부여
2. 징계 대상 학생의 인격 존중

3. 징계 절차 존중
4. 교육적인 징계를 통한 반성의 기회 제공
5. 징계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노출 금지

제35조(징계의 종류)

-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전주온빛초등학교 안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 기간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제1항제4호의 출석정지는 1회 10일 안, 연간 30일 안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 대상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방법)

- ①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 등의 지도 아래 전주온빛초등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 ②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사회봉사에 불참하거나 지역 공공기관 등에서 이탈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③ 제34조 제1항 제3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하며, 교육이수 확인서나 상담·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고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가정학습을 해야 하며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보호·감독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주온빛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출석정지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제37조(진술권 보장 등)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통화 일시와 통화 내용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사안을 심의하기 전에 간사로부터 사안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 ④ 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그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심의 확정)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결정한다.
- ②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곧바로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심의 결과(징계 내용) 통보를 받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부터 5일 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관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유보 등)

- ① 학교장은 학생이 징계 중에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참여하는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징계 중에 있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이 뚜렷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의 해지, 징계의 경감, 징계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또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학생에게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0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전주온빛초등학교생활규정(이하 “생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의 4/10이상이 되어야 한다. (참여비율은 학교장, 학부모대표, 학생대표의 협의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
 2. 재직 교원의 과반수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
 3. 학부모 대표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가 생활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때(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생활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으로 하되, 제1항제5호에 따른 발의 시기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의견 수렴)

- ①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3조(심의 절차)

- ① 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4조(안내 및 연수)

- ① 개정된 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 한다.
- ② 개정된 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부칙 <2021.02.17.>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7일부터 시행한다.